

조세 재정

2017. 3. 31(통권 제44호)

BRIEF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오종현 부연구위원(044-414-2289)



BRIEF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오종현 부연구위원 (044-414-2289)

I. 연구 배경	02
II.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03
III. 상속·증여세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08
IV. 상속·증여세가 세대별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	12
V. 결론 및 시사점	18



* 본 조세재정 Brief는 오종현·최승문·강성훈이 2016년도에 수행한 연구인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서 16-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I 연구 배경

- ● 최근 부의 대물림과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상속·증여세제가 거론됨
 - 상속·증여세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며, 부의 집중 및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 반면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은 고령층보다는 젊은 계층에서 더 활발한 반면, 이러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산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원활한 자산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임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먼저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논의함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보다는 증여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 사전증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 그다음으로 상속·증여세제의 완화가 소비를 진작시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자산이전과 세대별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함

II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며 이에 따라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
 - 유산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아버지가 10억원을 두 명의 자녀 각각에게 5억원씩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봄
 -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아버지가 이전한 총자산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취득세 방식하에서는 두 자녀가 이전받은 자산 5억원에 대하여 각각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9천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함

[그림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세부담 비교 I



〈표 1〉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어느 한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님
 - [그림 1]을 살펴보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 하지만 [그림 2]의 경우에는 반대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유리함
 - 유산취득세 방식인 우리나라 증여세제의 경우 직계존속은 모두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억원씩 한 명의 자녀에게 총 10억원을 이전하였다면,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세 방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이전한 자산 5억원을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9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하며, 총세부담은 1억 8천만원임
 - 즉, 세부담의 유불리는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과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 중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임

[그림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세부담 비교 II



- 세부담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과 증여가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음
 - 다만 세부담의 높고 낮은 문제는 과세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는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두 세제의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함
 -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유산세 방식임
 -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는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있음
- Mirrlees(2011, pp. 356~367)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을 주장함
 - 이는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인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하에 자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배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자산이 감소한 사람보다는 증가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에 더 부합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라야 함
-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과세행정 및 과세환경상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음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게 되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과 상속가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유산취득세하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거두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행정비용도 높아질 것임
 - 또한 나성길 외(2015, pp. 32~36)가 지적한 것처럼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장분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음

2.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차이

- ●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의 세부담이 더 높음
 -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제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임
 - 가업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세제와 증여세제의 공제제도는 주로 인적공제에 해당됨
- ●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한다면 상속의 경우 상속가액 5억원까지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세부담이 발생함
 -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 공제는 5천만원임
 - 상속 또한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나,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작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표 2〉 상속세의 주요 공제제도

구분		공제액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	
공제 ①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자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¹⁾ 의 연수
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	
공제 적용 금액		배우자 공제 + [공제 ①과 공제 ② 중 큰 금액]	

주: 1) 2010년 12월 27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중 “75세까지의 잔여연수”를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로 함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표 3〉 증여세의 주요 공제제도

구분	공제액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직계비속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에 대한 세부담은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자산이전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보다 많더라도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음
 - 즉,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모는 굳이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증여하여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 자산이전의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달라지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산이전의 행위에 왜곡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이 유사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의 통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과 증여의 공제규모가 유사해지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Ⅲ 상속·증여세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설문조사 개요

- ● 증여세를 완화할 경우 소비가 진작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 앞서서도 논의하였듯이 상속보다 증여의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증여세를 완화하여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자산이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재정패널자료 등 일반적인 미시자료들은 상속·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고자산가들이 과소표집되어 실증분석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각각 250명씩을 대상으로 자산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들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부모세대는 55세 이상으로 자녀가 1명 이상이며,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됨
 - 자녀세대는 30세~45세로 부모 중 최소한 1명이 생존하고, 부모의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됨
 -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순자산 기준 5억~10억원이 100명, 10억~20억원이 100명, 20억원 이상이 50명임
 - 자녀세대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 기준임
- ● 이하에서는 증여세 완화가 세대 간 자산이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자산이전 시 젊은 계층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봄
 - 증여세 완화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유의미해야만 함

2. 자금지원의 목적 및 자산이전 규모 변화

- ●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지원한 자금의 주된 목적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조사됨
- ● 부모세대의 경우 자녀에게 평균적으로 지원한 1억 6,240만원 중 주택자금과 결혼자금

의 합이 1억 2,778만원으로 약 78.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약 5,13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전월세 보증금을 위하여 평균 4,14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됨
- 혼수, 예물 등 결혼자금으로 평균 3,503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응답함

〈표 4〉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	5,130	10,669	0	54,640
전월세 보증금	4,145	8,869	0	45,418
결혼자금	3,503	5,290	0	32,054
주식	130	1,327	0	18,213
자동차 구입자금	1,268	2,442	0	19,549
사업자금	1,076	4,907	0	45,855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563	2,579	0	24,500
기타 실물자산	17	116	0	1,101
기타 금융자산	407	2,027	0	18,213
총지원금액	16,240	19,242	0	110,424

- 자녀세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3억 1,208만원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이중 주택 자금과 결혼자금이 2억 7,217만원으로 약 87.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평균 1억 8,561만원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평균 4,391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함
 - 혼수, 예물 등 결혼자금 지원이 4,265만원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	18,561	31,267	0	227,666
전월세 보증금	4,391	8,750	0	64,197
결혼자금	4,265	5,902	0	47,878
주식	73	1,152	0	18,213
자동차 구입자금	753	3,241	0	42,307
사업 자금	1,425	5,710	0	50,000
기타 실물자산	72	408	0	3,764
기타 금융자산	1,668	14,978	0	227,547
총지원금액	31,208	44,142	0	463,213

- ● 한편 증여세를 완화하더라도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자산이전이 촉진될지는 미지수임
 -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부모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증여세제의 직계존속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자산이전의 증가는 평균 2,243만원에 그칠 것으로 조사됨
 - 순자산을 10억~20억원을 보유하는 계층의 자산이전 증가 폭이 가장 높아 동 계층이 증여세 완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6〉 증여세제 공제제도 변화 시 향후 5년간 자녀 1인당 증여 계획

(단위: 만원)

공제규모	순자산 규모			평균
	5~10억원	10~20억원	20억원 이상	
5천만원(현행)	3,349	8,701	16,493	8,119
2억원	4,861	12,093	17,903	10,362
증가규모	1,512	3,392	1,410	2,243

- ● 증여세 공제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자산이전의 증가가 크지 않은 이유는 증여세 공제규모의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증여세제의 현실화일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설문조사에서 자산이전에 대해 실제로 증여세를 신고한 응답자의 비율은 조사하지 못했지만 현실에서 주거비용과 결혼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과세관청에서도 30세 이상의 가구주가 2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 이는 사회적 규범상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강력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증여에 대한 직계존속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가량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자산의 규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증여세 공제제도의 완화는 사전증여의 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자산이전 효과보다는 증여세제의 현실화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됨

3. 부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소비 변화

- ●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이전받을 경우 단기적으로는(향후 1년간) 소비보다는 저축성 지출에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 1억원 중 소비에는 평균적으로 1,261만원가량 지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저축 및 투자에는 5,293만원, 부채상환으로 1,750만원가량 사용할 것이라 응답함
- ●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계층이 주로 고자산가들이라면 상속·증여의 세부담을 낮추어 자산이전을 확대하더라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소득, 자산, 부채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전자산 중 소비에 사용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고소득·고자산가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소비 진작을 위해 세대 간 자산이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고령층보다 젊은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임

- 하지만 젊은 계층이더라도 상속·증여세제 주요 대상자의 한계소비성향도 낮아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표 7〉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지출

(단위: 만원)

지원목적	집단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전체평균
소비	가구소득	1,432	1,353	833	1,261
	총자산	1,440	1,064	953	
	총부채	1,433	1,108	708	
부채상환	가구소득	1,476	1,628	2,370	1,750
	총자산	1,616	2,100	1,605	
	총부채	211	3,487	5,458	
저축 및 투자	가구소득	5,703	5,383	4,593	5,293
	총자산	5,275	5,564	4,863	
	총부채	6,492	3,772	2,958	
사업자금	가구소득	1,270	1,346	2,074	1,484
	총자산	1,331	1,200	2,579	
	총부채	1,653	1,354	875	

주: 가구소득 저집단: 5천만원 미만(63명), 중집단: 5천만~1억원(133명), 고집단: 1억원 이상(54명)
 총자산 저집단: 5억원 미만(142명), 중집단: 5억~10억원(70명), 고집단: 10억원 이상(38명)
 총부채 저집단: 0원(147명), 중집단: 0원 초과 1억원 미만(79명), 고집단: 1억원 이상(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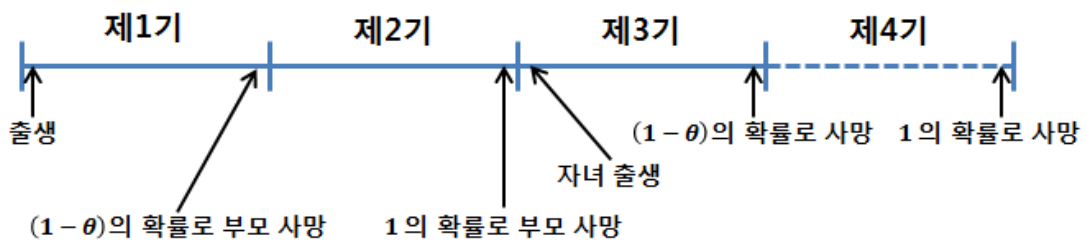
IV 상속·증여세가 세대별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일반균형모형과 자산이전 동기에 대한 가정

- ● 상속·증여세제가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함
 - 본 연구는 상속세만 존재하는 Nishiyama(2002)의 모형에 증여세를 도입하여 분석함
 - 이에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부의 이전문제를 다룰 수 있음
 - 한편, 설문조사나 실증분석 등을 통한 방법으로는 자산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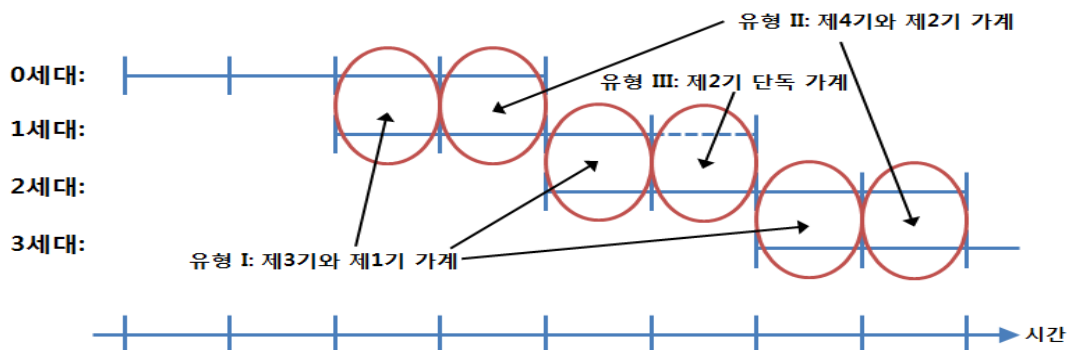
- 동 모형에서는 세대별 자산분포가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제가 세대별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함
 - 모형에서 한 개인의 생애는 [그림 3]과 같이 총 4기로 구분되며, 한 기간은 15년이라 가정함
 - 제1기(30~44세)와 제2기(45~59세)는 자녀세대이며, 제3기(60~74세)와 제4기(75~89세)는 부모세대임
 - 개인은 제4기 말(89세)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제3기 말(74세)에도 사망할 확률이 존재함
 - 이에 한 경제에는 [그림 4]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가계가 존재함
 - 제3기의 부모와 제1기의 자녀로 구성된 가계
 - 제4기의 부모와 제2기의 자녀로 구성된 가계
 - 부모가 사망하여 제2기의 자녀가 홀로 존재하는 가계

[그림 3] 개인의 생애주기



자료: Nishiyama(2002)의 FIG. 1.(p. 898)을 저자 수정

[그림 4] 가계의 3가지 유형



자료: Nishiyama(2002)의 FIG. 2.(p. 899)를 저자 수정

- ● Nishiyama(2002)와 마찬가지로 동 모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로 이타적(altruistic) 동기를 가정함
 - 이타적 동기에 의하면 자녀의 효용이 증가하면 부모의 효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이유를 부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함
 - 이타적 동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산수준이 낮아 효용수준이 낮은 자녀의 한계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들 간의 자산수준이 다를 경우 저자산 자녀에게 더 많은 부를 이전하여 자녀들 간의 부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부모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임
 - 한편, 동 모형에는 이타적 동기와 함께 우발적(accidental) 동기로 인한 자산이전도 존재함
 - 우발적 동기는 자신의 사망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금보험(annuity)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망시점에 남겨진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 ● 세대 간 자산이전을 포함하는 일반균형모형에서 자산이전의 동기로 자기만족적(joy-of-giving 또는 warm-glow) 동기를 가정하는 선행연구도 존재함(De Nardi, 2004; Bossmann et al., 2007)
 - 이타적 동기와 달리 자기만족적 동기를 지닌 부모는 자녀의 효용이 아닌 자신이 이전한 자산의 규모가 자신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이타적 부모와 달리 자기만족적 부모는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녀의 능력이나 소득 및 자산수준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이질적인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자녀들 간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지 않음
- ●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로 전략적 동기(strategic 또는 exchange)도 존재함
 - 전략적 동기는 부모가 자녀로부터의 봉양이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2.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과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

- ●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상속·증여세제가 변화하였을 경우에 대해 세대 간 자산이전과 궁극적으로 세대별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

- 증여세제의 직계존속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한 경우에 대해 분석함
- 상속·증여세제의 전반적인 실효세율의 변화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0.8배로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1.2배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함
- 증여세제의 공제규모를 확대하여 상속과 증여 간의 세부담 격차가 작아질 경우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의 자산이전 시기가 빨라지며 전체적인 자산이전의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표 8>의 공제금액 증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세대는 상속을 줄이는 대신 증여를 늘려 자산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이전에 대한 절대적인 세부담 수준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상속의 감소 폭보다 증여의 증가 폭이 더 커 전체적인 자산이전 규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낮출 경우에도 상속을 줄이고 증여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자산이전의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제3기와 제4기의 상속에 대한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출 경우 제3기의 상속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제4기의 상속은 감소함
 - 제3기의 상속은 이타적 동기와 함께 사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발적 동기로 인한 상속이 포함되어 있고, 제4기의 상속은 모두 이타적 동기로 인한 상속임
 - 증여 또한 이타적 동기로 인한 자산이전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 이타적 동기로 인한 자산이전의 규모와 시기가 빨라져 제4기의 상속은 감소함
 - 제3기에 발생하는 상속은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려던 자산이 아닌 본인이 제4기에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저축한 자산이 우발적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 또한 포함되어 있음
 - 즉,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 제3기의 저축에 대한 비용이 감소해 우발적 상속이 증가하는 효과가 존재함

〈표 8〉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자산이전 규모 변화

(단위: %)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를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총 자산이전	경제전체	9.71	19.01	5.45	-4.99
	제3기→제1기	11.23	20.46	4.46	-4.15
	제4기→제2기	-0.64	9.15	12.23	-10.72
상속	경제전체	-7.23	-11.18	-0.03	0.29
	제3기→제1기	-4.51	-6.38	1.79	-1.44
	제4기→제2기	-39.84	-68.75	-21.86	21.02
증여	경제전체	33.23	60.93	13.05	-12.32
	제3기→제1기	36.40	63.38	8.71	-8.49
	제4기→제2기	20.44	51.03	30.56	-27.79

주: 현행 제도 대비 변화율임

- ● 증여세의 공제제도가 확대될 경우 지니계수로 측정된 경제 전체와 각 세대별 불평등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동 모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로 이타적 동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됨
 - 자산이전의 동기로 이타적 동기를 가정할 경우 부자인 부모로부터 가난한 자녀에게로의 자산이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자산 불평등도가 감소하며, 경제 전체적인 불평등도 또한 감소함
 - 이타적 동기를 가정할 경우 세대 간 자산이전은 각 세대별 자산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증여세제는 이러한 경로에 마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이러한 결과는 상속·증여세의 완화가 부의 불평등도를 악화시킨다는 직관과는 상반되는데, 이는 모형의 단순한 가정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 경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함
 -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자산이전은 이타적 동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자기만족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만약 일반균형모형에 자기만족적 동기를 가정하여 분석한다면 증여세제를 완화할 경우 자녀 세대의 불평등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자기만족적 동기에서는 자녀의 자산수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자산수준만이 자산이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유한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많은 자산을 이전할 것이기 때문임

〈표 9〉 상속·증여세제에 따른 기초자산 지니계수 변화

		현행제도	공제금액 증가		실효세율 변화		
			2억원	5억원	0.8배	1.2배	
지 니 계 수	경제전체	0.7577	0.7533	0.7507	0.7611	0.7551	
	자녀 세대	소계	0.7931	0.7834	0.7773	0.7961	0.7911
		제1기	-	-	-	-	-
		제2기	0.7931	0.7834	0.7773	0.7961	0.7911
	부모 세대	소계	0.7279	0.7268	0.7266	0.7315	0.7249
		제3기	0.6915	0.6898	0.6887	0.6948	0.6888
		제4기	0.7922	0.7877	0.7877	0.7979	0.7870
변 화 율 (%)	경제전체	0.00	-0.59	-0.92	0.44	-0.34	
	자녀 세대	소계	0.00	-1.22	-2.00	0.38	-0.25
		제1기	-	-	-	-	-
		제2기	0.00	-1.22	-2.00	0.38	-0.25
	부모 세대	소계	0.00	-0.15	-0.19	0.49	-0.41
		제3기	0.00	-0.25	-0.41	0.48	-0.40
		제4기	0.00	-0.57	-0.57	0.72	-0.66

주: 제1기 초에는 자산이 없음

- 상속·증여세제의 완화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산이전의 동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완화한 경우 자산의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표 9〉에서 앞의 경우와는 달리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 자산의 불평등도는 오히려 악화되어 직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동 모형에서 증여는 이타적 동기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반면, 상속은 이타적 동기와 함께 우발적 동기에 의해서도 발생함

- 증여세의 공제제도 확대는 증여를 확대하고 상속을 축소시키는 정책으로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을 강화하고 우발적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은 약화시킴
-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정책은 상속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자산이전 전반을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이타적 동기와 우발적 동기에 의한 자산이전을 모두 강화시킴
- 즉, 증여세의 공제규모를 확대한 경우와는 다르게 실효세율을 낮춘 경우 고자산가인 부모가 자녀의 자산수준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우발적으로 상속하는 규모가 증가하며, 이는 불평등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V 결론 및 시사점

-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통일하고 공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서는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또한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해지도록 제도적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자산이전 행위에 대해 자산이전의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달라지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전의 행위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 설문조사 결과 증여세제를 완화하더라도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이며, 자산이전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증여세제의 직계존속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자산이전의 증가는 평균 2,243만원에 그칠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주택 및 결혼자금으로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약 1억 2,778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2억 7,217만원을 이전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 공제규모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공제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보다는 증여세제를 현실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택 및 결혼자금은 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전할 것으로 생각되나, 설문조사에서 자산이전 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대물림을 축소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우처럼 부모가 이타적인 동기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수준을 고려해 자산이전의 규모를 결정함
 - 이 경우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증여세제의 완화는 오히려 이러한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를 활성화시켜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이론적 모형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도출된 결론일 수 있으며, 자산이전 동기에 대한 가정에 따라 이와 같은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
 - 하지만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자산이전 동기에 따른 상속·증여세제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 참고문헌 |

- 나성길·정찬우·정평조, 『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삼일인포마인인, 2015.
- Bossmann, Martin, Christian Kleiber, and Klaus Wälde, “Bequests, tax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a general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7), 2007, pp. 1247–1271.
- De Nardi, Mariacristina, “Wealth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link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1 (3), 2004, pp. 743~768.
- Mirrless, James A., *Tax By Design: The Mirrlees Review*,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11.
- Nishiyama, Shinichi, “Bequests, inter vivos transfers, and wealth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Dynamics* 5 (4), 2002, pp. 892~931.



BRIEF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2017. 3. 31(통권 제44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

